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용 산 공 원 조 성 특 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효율적인 용산공원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·보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조사 및 기록의 작성·보전 업무 위탁기관 신설 (안 제17조의 4항)

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기록의 작성·보전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

나. 명칭 변경에 따른 차구수정(안 제18조)

「동물보호법」에 규정된 “반려동물” 정의에 맞추어 “애완동물”을 “반려동물”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용산공원 등의 관리 위탁)”을 “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20조제2항”을 “법 제57조의3 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0조제3항”을 “법 제57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·보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(이하 “공기업”이라 한다)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3. 도시·환경·조경·건축·토목·사회·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

4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
5. 그 밖에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·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**애완동물**”을 각각 “**반려동물**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기초조사의 의뢰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	<삭 제>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(이하 “공기업”이라 한다)	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	
3. 도시·환경·조경·건축·토목·사회·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	
4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	
5. 그 밖에 용산공원 및 복합시	

<u>설 조성 등에 필요한 기초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</u>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초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1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법 제57조의3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법 제57조의3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·보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-	---

<u><신 설></u>	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(이하 “공기업”이라 한다)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. 도시·환경·조경·건축·토목·사회·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 4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5. 그 밖에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·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위
--------------------	--

	<u>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초조 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
제18조(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)	제18조(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)
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.
1. 동반한 <u>애완동물</u> 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아니하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	1. ----- <u>반려동물</u> ----- ----- -----
2. 동반한 <u>애완동물</u> 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	2. ----- <u>반려동물</u> ----- ----- 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	
연 락 처	(02) 2131 - 2021